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결위에서 예비심사 내용 변경 시 상임위 동의 필요〉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01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진숙 · 김선민 · 김정호 · 이인영 · 이정문 · 박 정
이수진 · 전용기 · 오세희 · 허종식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3. 6.

3. 회 부 일 : 2026. 3. 9.

※ 의안번호 : 173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 존중에 대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예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

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제5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④ (생략)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 -----변경하 는----- ----- ----- ----- -----예 <u>비심사 내용의 변경에</u> ----- ----- -----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헌법 제104조 제1항 제1호(헌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는 ① 정부가 제출한 예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처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② 예비심사를 거친 각 부처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전체적인 심사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함으로써 처리함.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을 존중하고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²⁾

그러나 실제 예산안 심사 시에는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2)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7, p.412.

의결한 예산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예결특위 심사의 바탕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예비심사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음.³⁾

개정안은 예결특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액한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요구됨.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예결특위의 예산안 조정 권한을 약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 보장과 예결특위의 효과적인 거시적 재원배분 기능과의 균형과 재정건전성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방향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회의 의결 결과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증액이 감액을 크게 상회하나 본회의에서는 증액 규모가

3) 하종범, 「국회의 예·결산심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8.

상당히 조정되어 의결되는 것을 알 수 있음.⁴⁾ 일례로, 2024년의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지출이 1조 6,246억원 순증액하였으나 본회의 의결 시에는 정부 제출안 대비 2,331억원 순감액되었음.

[표-2]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및 본회의 의결 결과 비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비심사 결과			본회의 의결 결과			B-A
		증액	감액	증감(A)	증액	감액	증감(B)	
2021	총수입	492	△587,799	△587,307	407,046	△800,395	△393,349	193,958
	총지출	12,171,075	△906,607	11,264,468	8,084,788	△5,887,615	2,197,174	△9,067,294
2022	총수입	159	△1,311	△1,152	6,894,691	△2,174,487	4,720,204	4,721,356
	총지출	13,484,185	△1,810,222	11,673,963	8,778,802	△5,551,990	3,226,812	△8,447,151
2023	총수입	600	△228,330	△227,730	5,579	△263,590	△258,011	△30,281
	총지출	24,371,584	△1,796,126	22,575,458	13,455,735	△13,769,983	△314,248	△22,919,987
2024	총수입	250,212	△336,486	△86,274	341,220	△211,541	129,679	215,953
	총지출	17,018,227	△771,368	16,246,859	4,482,223	△4,715,414	△233,191	△16,480,050
2025	총수입	50,837	△376,004	△325,167	3,093,088	△3,364,391	△271,303	53,864
	총지출	18,590,289	△1,134,391	17,455,898	-	△4,109,144,883	△4,109,144,883	△4,126,600,781

주) 정보위원회 제외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심사백서, 2025. 3.

문 의 처

02)6788-5015

4) 다만, 2017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안 자동부제의가 도입된 이후 매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예산을 의결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회의 의결 결과의 차이가 예결특위의 조정에만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